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2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
발 의 자 : 임만균, 이경선 의원 (2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김정환, 김정태, 노식래,
박상구, 성흠제, 홍성룡, 강동길,
채유미 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의 마을건축가 운영이 '18년에 도입되어 올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, 이 조례에 마을건축가의 정의 및 업무범위,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※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('18. 10. 29.), 제1기 서울시 마을건축가 위촉('19. 3. 4.)

2. 주요내용

- 마을건축가 정의, 임기, 업무범위, 예산지원 등을 추가 규정함(안 제37조)
- 마을건축가의 해촉 및 업무원칙을 추가 규정함(안 제38조 및 안 제3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축기본법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 제목 중 “공공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”를 “개별 공공사업 또는 마을 단위의 사업 등에 대하여”로, “(이하 “공공건축가”라 한다)”를 “(“공공건축가” 또는 “마을건축가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공공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로 한다.

제37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여, 제5항 중 “공공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로 한다.

제37조제4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마을단위 건축·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
2.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
3. 마을의 공공·민간사업 건축·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

시범사업 추진

4. 집수리 지원, 빈집개선,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마을의 민간 건축행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 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

5.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

⑥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 제목 중 “공공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공공건축가가”를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가”로 한다.

제39조 제목 중 “공공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공건축가 등”을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공공건축가 운영 등)</p> <p>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<u>개별 공공사업</u>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, 시공 및 유지·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<u>기획·설계 또는 총괄·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(이하 “공공건축가”라 한다)</u>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37조(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 -----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개별 공공사업 또는 마을단위의 사업</u> 등에 대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“공공건축가” 또는 “마을건축가”라 한다)-----.</p>
<p>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② 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----- -----.</p>
<p>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,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·자문</p> <p>2.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·「도시개발법」·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·도시개발사업 등)의 수립 자문</p> <p>3.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·설계에 대한 자문</p> <p>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 <u>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마을단위 건축·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</u> 2. <u>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을 공공성 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</u> 3. <u>마을의 공공·민간사업 건축·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</u> 4. <u>집수리 지원, 빈집개선,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마을의 민간 건축행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 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</u> 5. <u>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</u>
<p>④ 시장은 <u>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</u>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 <u>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</u>----- ----- ---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⑥ <u>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38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<u>공공건축가</u>의 해촉)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<u>공공건축가</u>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38조(----- <u>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</u>-----) ----- <u>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</u>가 -----</p>
<p>제39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<u>공공건축가</u>의 업무 원칙) ① 서울총괄건축가와 <u>공공건축가</u> 등 민간전문가(이하 이 조에서 '민간전문가'라 한다)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</p>	<p>제39조(----- <u>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</u>-----) ① ----- <u>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</u> 등 -----</p>

<p>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,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,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